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유아교육비의 결정주기(1년) 및 조사주기(3년) 명시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0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표준유아교육비의 결정주기(1년) 및 조사주기(3년) 명시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3.

3. 회부연월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

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표준유아교육비의 결정주기(1년) 및 조사주기(3년)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① ~ ③ (생략)	제24조(무상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은</u>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④ <u>교육부장관은</u> <u>표준유아교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u> ----- <u>거쳐</u> <u>매년</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준유아교육비 결정 현황]

(기준: 월,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4년도
표준유아교육비(사립)	557	600

* 자료: 교육부

-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 ☐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유아교육비의 결정 주기 및 그 결정을 위한 조사 주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¹⁾, 표준유아교육비 결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표준유아교육비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표준유아교육비의 결정 주기 및 그 결정을 위한 조사 주기를 각각 1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준유아교육비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표준유아교육비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표준유아교육비 결정을 위한 최초 조사 시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육부는 물가 상승·인건비 변동 등 유아교육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 및 결정시기를 명문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문 의 처
02) 6788-5187

참고 1

누리과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

1.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5세	2020.1.1. ~ 2020.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4세	2021.1.1. ~ 2021.12.31.			
	3세	2022.1.1. ~ 2022.12.31.			

2.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5세	2019.1.1. ~ 2019.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4세	2020.1.1. ~ 2020.12.31.			
	3세	2021.1.1. ~ 2021.12.31.			

3. 2024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5세	2018.1.1. ~ 2018.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4세	2019.1.1. ~ 2019.12.31.			
	3세	2020.1.1. ~ 2021.2.28.			